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실태 및 개선 방향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 본고는 국내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기준 현황 및 실태, 미국과 일본의 사업자 선정 기준 및 특징 등을 살펴본 후에 적절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
- 근로자의 최종적인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선정이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퇴직연금제도가 잘못 운영되어 기금이 부실화되면 기업경영과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정형화된 사업자 선정 기준 미흡 등으로 운용 능력, 전문성, 안전성, 서비스 제공 능력과 같은 퇴직연금 본질적 기능이 배제되고 기존 거래관계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짐.
 -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300개 기업)의 경우 절반(51.7%) 이상이 기존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미국 등은 사업자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자 선정 이유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거래관계 등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규제함.
- 따라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바람직함.
 - 첫째,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 안전성, 전문성, 운용 능력,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사업자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유형별로 사업자 선정 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함.
 - 둘째, 사용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근로자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 선정 기준의 적용 대상기업(현재 300인 이상 기업)의 확대가 필요함.
 - 셋째, 정량 평가(단기수익률 등) 및 정성 평가(서비스 등)를 결합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외에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사용자 등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 검토가 요구됨.

1. 검토배경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최종적인 노후자금인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의 선정은 근로자의 수급 권보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퇴직연금제도가 잘못 운영되어 부실화되면 기업경영과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자금의 운용실패 등으로 파산 시 자칫 근로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정형화된 사업자 선정 기준 부재로 운용 능력, 전문성, 서비스 제공과 같은 본질적 능력보다는 거래관계¹⁸⁾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단기적인 운용성과 또는 거래 관계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추세임.
-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사업자 선정 기준¹⁹⁾을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미·일 등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보고는 사업자 선정 기준 현황 및 실태, 미국과 일본의 사업자 선정 기준 및 평가체계 등을 비교·검토한 후에 사업자 선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8) 기존 거래관계는 은행의 경우 대출관계,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인수 등 투자관계, 보험사는 기존 퇴직보험 거래관계 등을 의미함.

19)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비로소 사업자 선정 관련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적용대상, 수탁자책임 및 제재조치 면에서의 문제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2. 국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기준 및 실태



가. 선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2년 개정을 통해 사용자(기업)의 책무로서 선관주의²⁰⁾에 입각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규정을 신설함.²¹⁾

-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함(〈표 1〉 참조).

〈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1항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퇴직급여제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책무) 법 제3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4. 생략

자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2017).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기준은 구체성 미흡 등으로 실질적인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시행령 제32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능력’과 ‘전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음.

20) 선관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함.

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제2호에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기준을 사용자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업자 선정에 위한 평가기준(평가항목)과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퇴직연금의 특성에 부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용자 책무를 적용 제외하고 있어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

나. 선정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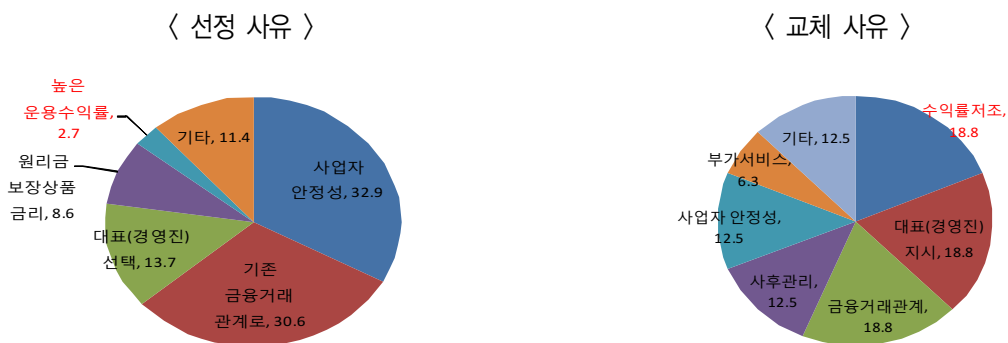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선정의 경우 기업이 일방적으로 선정하거나 근로자 개인의 기존 거래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회사단독 선정은 35%, 기존 거래관계는 13%가 응답한 반면 사업자의 운용 능력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9.7%에 불과함.²²⁾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도 부가서비스 능력 등보다 기존 금융거래를 우선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DB형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의 안정성(32.9%) 다음으로 기존 회사와의 금융거래 관계(30.6%)가 가장 높게 고려되고 있음.
- 사업자 교체 또한 사업자 안정성(12.5%), 사후관리(12.5%)보다 금융거래관계(18.8%)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²³⁾

〈그림 1〉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및 교체 사유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2014. 6).

22)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2014. 6).

23)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업자담당자(255명)와 근로자(643명) 등 총 8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300개 기업)의 절반(51.7%) 이상이 사업자 선정 시 기존 거래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은행(54.8%)이 가장 높은 수준임.²⁴⁾

● 거래관계의 영향으로는 은행, 생명보험, 증권 순이며 특히 “매우 영향을 받았다”는 비중의 경우 은행이 증권, 보험사보다 3배 크게 나타남.²⁵⁾

- 이상을 종합할 때 근로자보다 사용자(기업) 중심으로, 공정경쟁보다 거래관계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임.

● 결국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 등 본질적인 능력이 배제된 채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절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3. 해외 사례 및 평가



가. 미국

- 미국은 2006년 연금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선정 기준)을 제시함(〈표 2〉 참조).²⁶⁾

● 사업자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전문성, 자산운용 능력, 서비스의 질, 안전성 등임.
 - ‘전문성’은 전문인력, 운용경험, 전문가 지식 수준 등으로, ‘자산운용 능력’은 투자수익률, 투자상품 수, 투자정책 등으로, ‘서비스의 질’은 사후관리 서비스 수준, 시스템 구축 정도 등으로 평가함.

24)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중소기업퇴직연금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2015.12) 참조.

25) 거래관계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평가에서는 은행 20.0%, 증권사 7.7%, 생명보험사 7.6%로 나타남.

26) U.S.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Meeting Your Fiduciary Responsibilities(2008. 10).

〈표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선정 기준	세부평가 항목	평가 방법
전문성	• 전문인력, 운용경험, 전문가 수준 등	정성
자산운용 능력	• 투자수익률, 투자상품 수, 투자정책 등	정량 (투자정책: 정성)
서비스의 질	• 사후관리 서비스 수준, 서비스시스템 등	정성
안전성	• 신용평가등급, 재무건전성 수준 등	정량

자료: 미국 연금보호법 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즉, 투자수익률 위주의 정량 평가 이외에 정성 평가(서비스 질, 전문성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서비스의 질, 전문성과 같은 정성 평가를 선정 기준에 포함한 이유는 퇴직연금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임.²⁷⁾

■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한 후 선정하고, 이 선정 과정은 문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함.

- 선정 기준 마련으로 투자수익률 위주의 사업자 선정에서 운용체계의 질과 서비스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또한 사용자에게 사업자 선정 과정을 문서로 작성토록 하여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일본

■ 일본은 사용자가 사업자의 서비스,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함.

- 후생노동성 통지(通知)²⁸⁾에서는 사업자 선정 시 운용성과에 관한 정량 평가뿐만 아니라 투자철학, 운용체제 등에 관한 정성 평가를 고려한 종합평가를 하도록 규정함.
 - 정량 평가는 시가에 의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산의 종류별로 적절한 시장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다른 사업자의 수익률과 상대적 비교를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27) 미국연금전문지 플랜스폰서(plansponsor)에 의하면 DC형 운용기업과 근로자는 연금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후 서비스(1위), 자산운용성과(2위), 재무건전성(3위)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8) 일본의 후생노동성 통지(通知)는 법, 시행령 다음의 법적 조치에 해당함.

- 정성 평가는 운용체계 및 운용 능력, 서비스 내용 및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확정기여연금법 시행규칙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 이유를 퇴직연금 도입 시 필수 승인서류²⁹⁾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한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사업자평가결과) 등에 의해 충분히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³⁰⁾
 - 이를 위해 가입자 이익 관점에서 사업자의 전문성, 업무수준, 서비스 내용, 수수료 등을 복수의 사업자 대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후 선정된 결과(사업자 선정 이유)를 제출하여야 함.
 - 즉 사용자는 복수의 사업자(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업무능력 등을 비교 평가 한 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 또한 사용자는 긴밀한 관계(자본, 거래, 인적 등)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사업자 선정을 엄격히 규제함.
 - 계열사 밀어주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완 장치(예: 사업자 평가결과 제출 등)를 마련함.

다. 해외 사례 평가

■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미·일의 사례를 종합하면 ① 사업자 선정 기준의 정형화 ② 정량 평가 중심에서 정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 ③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유도 등으로 요약됨.

■ 퇴직연금관련법상에 사업자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기준) 형태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사용자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음.
- 즉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 평가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29) 퇴직연금 도입 시 승인서류로는 ①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경위 ② 사업자 선정 이유 ③ 사업자 등록 통지서류 사본 ④ 등기부 등본 등임.

30) 일본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사업자 선정 이유)은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 평가는 퇴직연금제도의 노후보장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량 평가 중심에서 정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임.

- 사업자 평가 기준이 투자수익률과 같은 자산운용 성과 중심에서 사업자의 안전성, 전문성, 서비스 중심으로 점점 전환하는 추세임.³¹⁾
- 일본은 정량 평가에 의한 사업자 평가를 2000년까지 지향하여 오다가 본격적으로 2001년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정성 평가 위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기초한 사업자 선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임.

- 일본은 대출 및 거래관계 등에 의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 않도록 정책당국에 사업자 선정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4. 개선 방향



■ 사업자 선정의 제도 개선은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계약형 퇴직연금 운용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우리나라는 계약형 퇴직연금 운용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해외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보다 사업자 선정이 매우 중요함.

■ 첫째, 퇴직연금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안전성, 전문성, 운용 능력, 서비스 능력이 사업자 선정 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선정 기준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기 때문임.

31) 미·일의 경우 단기적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점점 인식함에 따라 서비스 등 정성적 평가를 보다 중시하게 됨.

- 퇴직연금 유형별(DB형 및 DC형 퇴직연금)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을 장기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운용리스크의 부담 주체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자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차별화가 요구됨.
- 둘째, 사용자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설정하여 선정 과정을 객관화하고 사업자 선정 기준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이유를 보고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존재함.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 기준 적용(현재 300인 이상 기업만 적용)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요구됨.³²⁾
- 셋째,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유용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자 평가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정량 평가기준(투자수익률 등)과 정성 평가기준(서비스능력 등)을 결합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업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규약 등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요구됨. [kiri](#)

32)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가 취약하므로 이들을 위한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요구됨.